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3
----------	------

2016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1월 10일, 김동욱 의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또한, 현행 조례는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이 부족하여 제3조의 5항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집행에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서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 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중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후 예우에 대한 내용(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 법적인 근거를 강화함.
-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3조).
- 뇌사 또는 사망 장기등기증자로 예우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장기등기증자의 예우관련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함.
- 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을 포함하며 그 방법을 심리 지원으로 하여 지원의 방법을 확대함.

- 예우의 대상을 생명나눔(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1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
- 제14조를 신설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구체적 법적근거를 확보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다. 협의사항 : 시민건강국 협의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 조례는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시민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이 부족한 상태임.
- 이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의 5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제14조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근거를 확보함.
- 제11조를 일부 개정하여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시민적 예우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함.
- 이를 통해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sup>1)</sup>

### 2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지원대상의 범위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조문내용에 맞추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본 개정안 제3조는 제5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sup>2)</sup>

1) 서울시는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였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2014년 3월 20일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 유족에 대한 지원은 본 조례 개정안이 금전적인 지원을 유족에게 하는 것이 아닌 ‘상실에 대한 슬픔’에 대한 유족의 심리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적절한 수준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 집행부는 최초 직계존비속만을 유족범위에 넣을 것을 의견으로 제안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지원대상의 범위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이유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대상을 따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신설> 5. “유족”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

#### 나. 예우와 추모 및 유족지원의 방법

-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1항은 장기등기증자<sup>3)</sup>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였음. 이로 인하여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 등 이들의 생명나눔실천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 ※ 개정전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추모행위를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만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실적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개정하여 정보통신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기존 조례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것을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힘.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심리치료라는 것은 병리적 현상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모든 유족이 개인 삶의 사건에 병리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심리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명서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 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② 제1항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명서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u>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u> 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u>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u> 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삭제) 2. <u>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u> ② 제1항 각호 <u>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유족</u> 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장이 정한다.</u>

####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 본 조례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관련 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본 개정안의 주요한 개정취지인 제11조 제1항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제12조의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은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게 하였음. 또한 제4호에 따른 지출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였음.
- ※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의 장기기증관련 홍보예산의 지출은 2016년기준

25백만원으로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지원하고 있었음(조례 제10조 제2항에 근거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 3. 제12조 제3항 사업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종합의견

- 장기기증과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며<sup>4)</sup>, 홍보 등의 활동은 시민단체가 주가 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앞장서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하겠음.
- 국가 전체적으로 생명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간다는 의도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의를 생각하면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이는 서울시민의 이타적인 시민의식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져 개정안의 실익이 존재함.
- ※ 장기기증 홍보를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짐.
- 다만, 추모공원이나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여겨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이 통과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추모공원이나 조형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 추모공원이나 조형물의 설치에 생명나눔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한 시민에 대한 예우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조성이 되어야 할 것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기증 서약자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임.

4) 질병관리본부 KONOS에서 장기기증관리를 전담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3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경자(양천), 김생환,  
문형주, 박기열, 송재형, 오경환,  
이정훈, 장인홍, 허기회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또한, 현행 조례는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이 부족하여 제3조의 5항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집행에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서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 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 중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후 예우에 대한 내용(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 법적인 근거를 강화함.
- 나.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3조).
- 다. 뇌사 또는 사망 장기등기증자로 예우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장기등기증자의 예우관련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함.
- 라. 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을 포함하며 그 방법을 심리지원으로 하여 지원의 방법을 확대함.
- 마. 예우의 대상을 생명나눔(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바.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1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
- 사. 제14조를 신설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구체적 법적근거를 확보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시민건강국 협의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조표
  - (2)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족”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 각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
3. 제12조 제3항 사업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p> <p>제11조(예우 및 지원)</p> <p>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명서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p> <p>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p> <p>② 제1항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lt;신설&gt;</p> <p>5. “유족”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p> <p>제11조(예우 및 지원)</p> <p>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명서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b>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b>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b>1.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b>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삭제)</p> <p><b>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b></p> <p>② 제1항 각호 <b>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유족</b>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b>시장이 정한다.</b></p> <p>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p> <p>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p> <p>3. 제12조 제3항 사업</p> <p>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항 대상에 있어 당초 기증자에서 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을 추가하여 추모 관련 사업과 유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발생
- 같은 조례안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를 신설하여 시장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단체,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발생
  - 단, 제14조제1호와 제3호는 서울시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조례안		기 추진사업	2016 예산	세부 내용
제14조 ( 행정 적·재 정 적 지원)	제1호 기관 및 단체지원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사업	25,000천원	장기기증등록기관인 (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지정 및 지원
	제3호 홍보대사 홍보활동비 지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업에 포함하여 홍보대사 홍보활동비 지원

자료 :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14조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11조제2항)고 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제5호 국립장기기식관리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조직의 기증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작성업무를 수행하나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부문을 하지 않고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    책    조    사    팀    장      여    차    민  
주    무    관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